

헌법재판소공보

제322호

2023년 8월 20일(일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목 차 —

법 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515호)	1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517호)	1144

규 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58호)	1148
--	------

내 규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헌법재판소내규 제269호)	1150
------------------------------------	------

인 사

.....	1163
-------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1164
심판사건통계표	1166
등록도서현황	1168
주요신착도서	1168
- 2023년도 7월 구입도서	1168
- 2023년도 7월 교환도서	1186
헌법재판소장 동정	1187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1188
------------------	------

판 려	1189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 03060 대표전화 (02)708-3456 <https://www.ccourt.go.kr>

◆ 소리로 읽는 공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우측 상단).

법 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515호
2023. 7.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수사절차”를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들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미만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들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피해자들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들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들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

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법정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항”을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제36조제1항 본문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19세미만 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

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복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찰”을 “사법경찰관”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을 “19세미만피



해자등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제30조제4항·제5항”을 “제30조”로, ““검찰관”으로”를 ““군검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제49조의2 제1항).

규 칙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58호 7. 7.)
2023. 7. 7.)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헌법재판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헌법재판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 삭제(현행 제12조 삭제)
- 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규정 삭제(현행 제15조 삭제)
- 라.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신설(제10조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3 신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내 규

○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헌법재판소내규 제269호
2023. 7.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8호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청사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방호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와 별관청사를 말한다.

2. “공관”이란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말한다.
3. “청사등”이란 청사와 공관을 말한다.
4. “질서유지”란 법률에 따라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안녕과 평온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이하 “소란 행위”라 한다) 또는 상황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헌법재판소 직원”이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소속된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말하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다른 기관 소속의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직원에 포함된다.
6. “근무자”란 헌법재판소방호대에 속한 재직자 중 비번, 휴가, 휴직 등인 사람을 제외하고 청사 또는 공관에 출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유사시 다른 근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근무(이하 “상황대기근무”라 한다)를 하는 자도 근무자에 포함된다.
7. “방문자”란 심판사건 관련 민원인, 심판사건의 청구인·피청구인·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 참고인, 변론·선고 등 방청객, 헌법재판소도서관 이용자, 헌법재판소 내의 각종 행사 참석자,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 관람자, 견학 참석자, 업무상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 전직 헌법재판소 직원 등 헌법재판소 직원이 아닌 청사 출입자를 말한다.
8. “방호장비”란 가스분사기·무전기·삼단봉 등 개인용 방호장구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포함하여 방호와 관련된 각종 장구류, 장비류를 통칭한다.
 - 가. 스피드게이트·차량차단기 등
 - 나. 문형 검색대·엑스레이(X-ray) 소형화물 투시기(이하 “투시기”라 한다),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 다. CCTV·적외선감지기·도청감지장비 등(이하 “관제장비”라 한다)
9.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지침 등과의 관계)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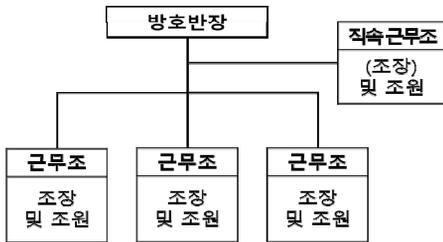


영이나 근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업무수칙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지휘체계 및 업무분장 등

제4조(지휘체계) ① 청사등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방호대를 총무과에 설치하고, 방호대원은 청사등에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이하 “방호대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헌법재판소방호대에는 현장 지휘·감독자로서 방호반장 1명을 두고, 방호반장 아래에는 방호대원으로 구성된 근무조를 두어 아래 표와 같이 지휘체계를 편성한다.



③ 근무조에는 조장을 둘 수 있으며, 각 근무조는 제21조에서 규정한 근무지에서의 근무를 담당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방호반장 아래에 특정한 근무지를 담당하지 않는 방호반장 직속의 근무조를 두어 서무업무 및 방호장비 관리, 교통정리, 소란행위자 통제 등 방호반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방호반장은 방호반장 직속의 근무조를 조장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방호대 담당계장) ① 방호대 담당계장은 총무과 소속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중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② 방호대 담당계장은 총무과장의 통솔 하에 방호대 담당주무관과 방호반장을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총괄
2.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발전방안 총괄
3.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예·결산, 인력증원, 각종 국회업무,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업무 총괄
4.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고충상담 및 제안 업

무 총괄

5. 방호대 담당주무관 및 방호반장의 복무관리
6. 방호대원 복무관리 및 근무관리 총괄
7.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의 지휘·감독

제6조(방호대 담당주무관) ① 방호대 담당주무관은 총무과 소속의 6급 또는 7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중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② 방호대 담당주무관은 방호대 담당계장의 통솔 하에 방호반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등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2. 규정, 인원, 제복 및 장비 관리
 - 가. 방호대원 복무·근무 관련 각종 규정 및 업무수칙 관리
 - 나. 근무조의 정원 및 담당 근무지 관리
 - 다. 방호대원 보수·수당 관리
 - 라. 방호대원 제복 지급 등 관리
 - 마. 방호장비 구매, 불용 및 재고 관리
3.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규정 및 발전방안 관리
4. 안전, 질서유지 및 응급상황 관련 계획
 - 가. 청사등 질서유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5.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고충상담, 제안 및 의견수렴
6.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예·결산, 인력증원, 각종 국회업무,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업무
7.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

제7조(방호반장) ① 방호반장은 총무과장이 방호대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방호반장은 총무과장의 통솔과 방호대 담당계장의 감독 하에 조장을 포함한 방호대원들을 지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등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현장지휘·감독
 - 가. 청사등 출입통제 및 검색
 - 나. 심판정 주변 질서유지
 - 다.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감독
 - 라. 대외기관 협력
 - 마. 방호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상

황관리

- 2. 방호대원 관리 현장지휘·감독
 - 가. 복무관리
 - 나. 근무관리(각종 상황 발생 시의 인력재배치를 포함한다)
 - 3.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고충상담, 제안 및 의견수렴
 - 4.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업무의 현장지휘·감독
 - ③ 방호반장은 총무과장 및 방호대 담당계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채용, 보직 및 방호대 운영 관련 의견 제시
 - 가. 방호대원 신규채용 관련 의견 제시
 - 나. 근무조의 조장 후보자 추천
 - 다. 방호대원 인력증원 및 지휘체계 편성 관련 의견 제시
 - 2. 상벌 부여 및 평가 관련 의견 제시
 - 가. 개인별 가·감점 부여를 위한 과실 적발 또는 특별기여 확인
 - 나.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평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
 - 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의견 제시
 - 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심사와 관련된 의견 제시
 - 3. 그 밖의 복무 및 근무 관련 의견 제시
 - ④ 총무과장과 방호대 담당계장은 제3항에 따른 방호반장의 각종 추천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 ⑤ 총무과장은 방호반장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방호반장이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 3.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질병·부상·휴직·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으로 방호반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방호반장 외의 방호대원) ① 각 근무조의 조장은 방호대원 중에서 방호반장의 추천을 받

아 총무과장이 지정하며, 조장의 권한은 이 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방호반장이 자신의 권한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방호대원은 방호반장의 통솔 하에 이 내규에 규정된 업무 및 총무과장 또는 방호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복무 및 근무

제9조(제복착용) ① 방호대원은 근무 중에 사무처장이 정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방호대원이 정해진 제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1. 신규 방호대원이 제복 지급 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 2. 기존 방호대원의 제복이 근무 중의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 3. 그 밖에 제복을 착용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을 총무과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 사항 이외에 방호대원의 복장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제10조(친절, 품위유지 및 상급자에 대한 복종)

① 방호대원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며, 방문자 또는 헌법재판소 직원과의 대면대화·전화통화 시에 무시·조롱·책임회피성 언행이나 욕설·인격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방호대원은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며,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방호대원 상호 간에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근무 및 근무지이탈금지) ① 방호대원은 직무와 관련된 규정과 업무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 중(상황대기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를 대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근무유형 및 근무형태) ① 방호대원의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인 방호대원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근무자의 근무유형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로 한다.

③ 근무자별 근무형태 및 근무요령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④ 방호반장은 흑한·흑서 또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근무 시 건강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야외 근무자를 실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근무시간	
	인수인계(합동근무)	
주간근무	09:00 ~ 18:00	17:50 ~ 18:00
야간근무	17:50 ~ 다음날 09:10	다음날 09:00 ~ 09:10
휴일근무	09:00 ~ 다음날 09:10	다음날 09:00 ~ 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방호대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의, 변론, 선고 등 재판관련 업무가 제1항의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
2. 그 밖에 총무과장이 근무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간근무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주간근무시간 전후로 최대 30분까지의 시간을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 다음 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등을 위한 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간근무자의 정규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근무시간 중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간근무자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산정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과장은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에게 그 다음 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비번일로 부여한다.

제14조(초과근무신청) ① 방호대원의 초과근무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호대원은 주간근무 중의 초과근무신청을 출퇴근 시에 등록한 시간 범위 안에서 하되, 산책·외출·운동 등 사적 용무로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신청한다.

제15조(근무조 배치 및 근무편성 등) ① 총무과장은 방호반장을 제외한 모든 방호대원을 각 근무조에 배치한다. 각 근무조의 시간대별 근무자 편성은 방호반장이 담당한다.

② 방호반장 직속의 근무조를 제외한 근무조는 제21조의 각 근무지를 담당하며, 각 근무지의 시간대별 근무자 편성은 담당 근무조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를 담당 근무조와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근무조별 담당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3~4개월 단위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순환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6조(근무명령) ① 방호대원 근무명령은 방호반장이 작성하고 방호대 담당계장이 검토한 뒤 총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주간근무명령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간근무시간을 대상으로 제15조제1항의 근무조 배치를 반영하여 발령한다.

③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른 당직근무명령의 일부로써 발령한다.

④ 주간근무명령의 변경승인은 제2항의 주간근무명령 발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의 변경승인은 당직근무명령의 변경승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대원에게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방호대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호대원
3. 방호반장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방호대원

⑥ 제5항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 제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야간 및 휴일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1. 임신 중인 방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호대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제외 대상자의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17조(근무인원 유지) ① 총무과장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항상 적절한 근무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장은 담당 근무지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자와 비번자(이하 '부재인원'이라 한다) 수를 통제하고 근무조 안에서 부재인원의 증가·변경으로 인한 근무조정을 담당한다.

③ 방호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재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근무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근무를 조정한다.

- 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포함하여 총무과장이 정하는 휴가
- 2. 휴직, 퇴직 또는 직위해제
- 3. 헌법재판연구원이나 다른 부서로의 지원근무

제18조(휴가 승인의 예외) ① 총무과장은 변론기일·준비절차기일·선고기일 등 각종 기일을 대상으로 하는 방호대원의 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휴가 승인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변론기일·준비절차기일·선고기일 등 기일이 지정된 경우, 총무과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승인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휴가신청 및 초과근무신청의 결재선) 방호대원이 휴가신청 및 초과근무신청을 할 때에는 방호반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방호반장은 방호대 담당계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상신한다.

제20조(복무·근무점검) ① 방호반장과 조장은 방호대원의 복무 및 근무를 항상 점검하고, 방호대 담당계장은 이를 감독한다.

② 방호대 담당계장, 방호대 담당주무관 및 방호반장은 방호대원의 복무 및 근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무과장은 방호대원이 복무 및 근무와 관련하여 이 내규의 규정, 총무과장이 정하는 업무수칙 또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면 개별 면담·감점 부여·근무조 변경·기강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지

제21조(근무지) ① 헌법재판소방호대의 근무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근무지의 세부 근무장소는 총무과장이 정한다.

- 1. 외곽근무지: 청사 정문과 별관청사 1층 주출입문 부근
- 2. 청사근무지: 본관청사의 중앙현관과 본관 및 별관청사 검색대 부근
- 3. 공관근무지: 공관 정문 부근

②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지를 추가하거나, 규정된 근무지를 통합·변경·제외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지 운용) 주간근무시간과 야간 및 휴일근무시간에 운용할 근무지와 세부 근무장소는 총무과장이 정한다.

제5장 기본 업무

제1절 청사 출입통제

제23조(출입문 개폐) ① 총무과장은 청사의 출입문 개폐 시간을 정하고, 방호대원은 총무과장이 정한 출입문 개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청사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제1항의 개폐 시간과 관계없이 출입문을 닫거나 열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방호반장이나 총무과장의 판단에 따라 출입문을 닫아 출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과장은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인원출입통제) ① 방호대원은 방문목적과 방문장소 등에 따라 청사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본관청사의 출입은 헌법재판소 직원에게만



허용하고 방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자에게는 본관청사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변론기일(준비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고기일 등으로 대심판정이나 소심판정이 개정될 때(이하 “심판정 개정일”이라 한다)에 대심판정 또는 소심판정을 방문하는 방문자
2. 총무과장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방문자

③ 별관청사의 출입은 헌법재판소 직원과 심판민원과 민원실·헌법재판소도서관·헌법재판소상설전시관 방문자를 포함하여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 허용한다.

④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정원에는 헌법재판소 직원 및 보행으로 이동하는 방문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방문자가 차량이나 자전거 등 보행 이외의 방법으로 일회성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승인이, 반복적인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⑤ 외곽근무지에 근무하는 방호대원은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5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 입장시키며, 방문자가 방문종료 시 출입증을 반납하면 보관 중인 신분증을 내어 준다. 다만,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5조제9항에 따라 출입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호대원은 총무과장이 정하는 안전 또는 질서유지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청사 출입과 서울 재동 백송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의 관람을 위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검색) ① 방호대원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하 “청사 출입자”라 한다)의 신체 또는 소지 물품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② 신체검색은 청사 출입자로 하여금 문형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며, 방호대원

은 상황에 따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청사 출입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다.

③ 물품검색은 청사 출입자가 소지한 물품을 투시기가 있는 물품 검색대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하되, 검색대 근무자는 청사 출입자에게 휴대한 가방이나 짐 등을 모두 투시기에 올리고 착용한 외투와 주머니 속 물건 등 부피가 작은 소지품도 바구니에 넣어 투시기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장 등으로 물품검색대에 의한 물품검색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방호대원은 청사 출입자에게 가방 등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지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⑤ 방호대원은 신체검색과 물품검색을 통해 청사 출입자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으로서 별표 1의 반입금지물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청사 출입자에게 물품의 임시보관이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 및 청사에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에 반입금지물품과 관련한 신고나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총무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색이나 제5항의 조치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청사 출입자에게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청사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색 시의 유의사항) ① 방호대원은 검색시에 청사 출입자에게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통한 여성 청사 출입자의 신체검색은 여성 방호대원이 담당한다.

③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도록 정할 수 있다.

1. 임산부
2. 제38조제2항에 따라 총무과장이 정하는 의견 대상자 및 그 일행
3. 제38조제3항의 의견 대상자 및 그 일행(신분증 또는 신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제시하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헌법재판소 직원 및 상시출입증을 사용하는 방문자

5. 그 밖에 총무과장이 정하는 청사 출입자
제27조(차량출입통제) ① 방호대원은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탑승자와 탑승자의 방문 목적과 방문 부서(또는 만나려는 사람)를 확인한 뒤 진입시킨다.

② 방호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일자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정문 안으로 진입시키지 않는다. 다만, 총무과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일자에도 차량의 정문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2. 휴일

③ 방호대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차량 내부를 검색할 수 있다.

제28조(그 밖에 출입통제 관련 사항) 이 내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를 따른다.

제2절 청사등 질서유지

제29조(청사등 외부 질서유지) 총무과장은 청사등의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사의 주최자나 행위자에게 자제를 요청하거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1. 불법적인 집회·시위의 발생
2. 집회·시위·기자회견 등 시민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청사 출입 방해나 과도한 소음의 발생 등

제30조(청사 내부 질서유지) ① 방호대원은 청사 부지 안 또는 건물 안(이하 “청사 내부”라 한다)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면 이를 패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 건물을 손괴하는 행위
2. 청사 내부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1의 반입금지물

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청사 내부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 내부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또는 각종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청사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 내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관련된 방호대원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써 청사의 안전이나 헌법재판소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③ 총무과장은 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방호대원을 배치하여 통제한다.

④ 방호대원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총무과장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명할 수 있다.

⑤ 총무과장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4항의 조치에 불응하는 사람의 퇴거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청사 건물 안 촬영 통제) ① 청사 건물 안에서 방문자는 총무과장의 허가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총무과장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사등에서 방문자는 헌법재판소 직원의 얼굴 또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헌법재판소 직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호대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총무과장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차량운행 및 주차통제) ① 청사 내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무과장이 정하는 운행방식과 제한속도
2. 추월 및 경적 사용금지
3.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4.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안전운행
 - ② 차량출입등록이 되지 않은 방문자 차량은 청사 내부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총무과장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차량출입등록 되지 않은 방문자 차량이 청사 내부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주차구획 또는 주차장별로 정해진 차량만 주차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 ④ 방호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알리며,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위반사실 안내문을 부착한다.
 - ⑤ 총무과장은 방문자의 장기 불법 주차 차량이 발견될 경우 종로구청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제33조(순찰) ① 방호대원은 외부 인원의 침입·배회 방지,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에 청사 내외를 순찰한다.

② 순찰의 경로, 횡수와 방식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③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방호대원(이하 “순찰근무자”라 한다)은 총무과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순찰근무자는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관제) ① 방호대원은 외부 인원의 침입·배회 방지,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방호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제장비를 통해 청사등 안전 및 질서유지 관련 정보수집, 보고 및 전파
2.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건·사고 발생사실 확인, 보고 및 전파
3. 관제장비의 운용 및 점검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 ③ 관제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제35조(방호장비 운용) ① 헌법재판소방호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호장비를 운용한다.

② 제1항의 방호장비의 설치·유지보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하며, 방호장비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정보화기획과·정보보호과·청사관리과 등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조치한다.

제3절 평의·변론·선고 시의 질서유지

제36조(평의·변론·선고 시의 질서유지) ① 총무과장은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날이나 심판정 개정일에는 제21조의 근무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근무지를 추가할 수 있다. 세부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등 추가 근무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1. 평의실근무지 :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바깥
2. 심판정근무지 : 대심판정 또는 소심판정 바깥
 - ② 총무과장은 심판정 관리부서의 요청을 받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정 개정일에 심판정 내부에 방호대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총무과장은 별표 1의 반입금지물품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발견되는 등 심판정에서 소란행위 발생이 예상되거나 방청객이 동시에 입장하여 매우 혼잡한 경우 심판정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본관청사 북쪽 출입문(서울 재동 백송 앞 자동문) 외부에서의 출입통제, 관할경찰관서장의 협조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④ 총무과장은 심판정 개정일에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정 시도가 있으면 청사 정문에서부터 그 진입을 통제하고, 이를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37조(평의·변론·선고 시의 강화된 방호 조치) 총무과장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의 전원재판부 평의가 열리는 날이나 심판정 개정일에 외부인의 침입이나 소란행위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실이 위치한 층의 방호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관청사의 방화문(철문)을 일부 또는 전부 닫아 계단을 폐쇄하고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8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공무원증등”이라 한다), 출입증 및 지문인식을 통한 계단 출입
2. 공무원증등, 출입증 및 지문인식을 통한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출입
3. 본관청사의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 폐쇄

제4절 안내, 의견 및 보고

제38조(안내 및 의견) ① 방호대원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문자의 요청 시 방문자 안내를 담당한다.

② 방호대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소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의견업무를 수행하며, 의견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③ 방호대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지시하는 방문자에게 제2항의 의견업무를 수행한다.

제39조(주요 내부 행사 시의 의견) ① 방호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서 정무직공무원 및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의견업무를 수행한다.

1. 정무직공무원의 취임식 및 퇴임식
2. 시무식
3. 창립기념행사
4. 그 밖에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내부 행사

② 제1항의 의견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제40조(보고 및 연락) ① 방호대원은 근무 또는 복무 관련 사항을 조장에게 보고하고, 조장은 방호반장에게, 방호반장은 방호대 담당계장에게, 방호대 담당계장은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근상급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② 방호대원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③ 방호대원은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대기근무를 포함한 근무 중에는 무전기를 향

상 휴대하여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제6장 평가 및 의견수렴

제41조(가·감점평가) ① 방호반장은 방호대원의 과실이나 특별기여사항을 확인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실 적발 보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기여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호대 담당주무관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방호대원의 과실 또는 특별기여를 판단한다. 총무과장이 방호대원의 과실 또는 특별기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호반장에게 알리고 총무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개인별로 부여한다.

③ 방호대 담당주무관은 방호반장을 제외한 방호대원의 개인별 가점 또는 감점을 반기별(1~6월, 7~12월)로 새로 누적하여 기록한다. 이때 가점과 감점은 서로 상쇄하여 계산한다.

④ 총무과장은 방호대원의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근무기간 연장(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청원경찰의 경우에 한한다), 후임 방호반장 및 조장 지정 등에 있어 제3항의 개인별 가점 또는 감점 기록과 방호반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반기별 누적 점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방호대원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별표 2의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감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감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자의 견란에 감점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수렴) ① 방호대 담당계장은 방호대원의 사기진작, 상·하급자 간의 소통 강화, 실무를 반영한 효율적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방호대원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 또는 간담회 등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상담 또는 간담회 등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며, 방호대 담당계장의 판단에 따라 집단별 또는 개인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교육

제43조(교육) ① 방호대 담당계장은 제20조의 복무·근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별상담과 함께 복무사항이나 근무기강과 관련된 교육 및 친절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방호대 담당주무관은 방호대원의 복무·근무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업무수칙 관련 교육, 방호장비의 운용 관련 교육 등을 담당한다.

③ 방호반장은 수시로 근무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④ 신규 임용된 방호대원에게는 임용 1년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청원경찰 교육) 방호반장은 청원경찰인 방호대원에게 제43조의 교육 외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 총무과장이 정하는 직무교육을 행한다.

제8장 기타

제45조(방호장비 등의 관리) ① 방호대 담당주무관은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방호장비 및 응급장비(이하 “방호장비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폐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방호반장은 방호대 담당주무관의 통솔 하에 방호장비등의 운용, 보관, 이동, 정기적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호반장은 방호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대원 중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방호장비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6조(위해성 방호장비의 관리) ① 총무과장은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방호장비를 이중잠금장치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중잠금장치의 열쇠는 방호대 담당주무관과 방호반장이 나누어 관리하며, 열쇠관리자가 휴가·외출 등으로 부재 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방호반장은 방호대 담당주무관의 입회 하에 서만 위해성 방호장비를 방호대원에게 내어 줄 수 있으며, 방호반장과 수령자는 수령을 전후하여 각각 위해성 방호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호반장은 위해성 방호장비를 내어 주기 전에 수령자에게 사용상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47조(열쇠관리)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본관청사 1층 안내실의 열쇠함에 보관한다.

제48조(위임규정) ①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업무수칙을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업공무원 지정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인 방호대원에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인 방호대원에게는 임용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보안관리란 및 23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24 교환실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 장	과 장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 재판소 방호대 운용	출입문 개폐시간 지정· 변경, 유사 시 폐쇄				○
		인원출입통제·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통제				○
		출입증의 제작·발급 및 관리				○
		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 명령 등)				○
		방호반장, 조장의 지정				○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 의 운영, 방호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 장	과 장
23	당직 명령	당직근무명령, 변경승인 및 감독					○
		당직실 운영					○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결권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 장	과 장
24	교환실 운영						○

②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청사방문인 출입안내 매뉴얼”을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로, “업무협의·도서관이용자 등 방문객은”은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방호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

⑥ 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방호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

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방호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⑨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부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부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단체 방문객의 출입)”을 “(단체 방문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체 방문객이”를 “단체 방문자가”로, “청사 근무자”를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담당”을 “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담당”을 “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총무과장 귀하”를 “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를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Table with 4 columns: 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Row 1: 청사 출입,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동의 안내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헌법재판소 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위한 헌법재판소 야외 정원 출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Table with 4 columns: 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Row 1: 백송 관람,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Table with 7 columns: 출입증 번호, 방문시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표시) 동의, 미동의, 서명

□ 출입증 발급신청자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반입금지물품 기준(제25조제5항 관련)

종류	예시	비고	
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도검류	과도, 주방용 칼, 회칼 등	
	총기류	가스분사기, 공기총 등	
	문구류	커터칼, 가위, 송곳 등	
	공구류	망치, 톱, 도끼 등	
	인화물질	휘발성 물질(시너, 휘발유, 페인트 등), 가스통, 화약류	
	기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위험물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	녹음, 녹화장비류	녹음기, 카메라 등	
	집회 및 시위용품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등 표지, 구호가 적힌 조끼, 리본 등	
	혐오물질	대소변, 동물의 사체, 부패한 음식물 등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물건	

[별표 2]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감점 기준표 (제41조제5항 관련)

구분	기준	비고
감점 부여	개인의 반기별 누적 점수 -10점당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 1점 감점	일의 자리 값은 절사
최대 감점	개인의 반기별 누적 점수가 -100점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10점 감점한다.	-

※ 예시

- 반기별 누적 점수가 -10점부터 -19점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를 절사하여 -10점으로 보아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1점 감점
- 반기별 누적 점수가 -20점부터 -29점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를 절사하여 -20으로 보아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를 2점 감점

[별지 제1호서식]

과실 적발 보고서

○ 과실자 성명 :
○ 적발일시 :
○ 적발장소 :
○ 적발내용 :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

과실사항	감점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기여 확인 보고서

○ 기여자 성명 :
○ 기여일시 :
○ 기여장소 :
○ 기여내용 :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

기여사항	가점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 제정이유

헌법재판소 청사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방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안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을 조직화하고 지휘체계를 설정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근무에 관한 사항·복무 및 근무의 점검과 평가·기본 업무·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지휘체계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나. 방호대원의 복무 관련 의무사항과 근무유형, 근무시간, 근무의 편성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다. 근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및 제22조)
- 라. 출입통제, 청사·공관의 질서유지, 평의·변론·선고 시의 질서유지 등 방호대원의 기본 업무를 규정함(제23조부터 제40조까지)
- 마.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점검, 가점과 감점평가, 소통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함(제20조, 제41조 및 제42조)
- 바. 교육에 관한 사항, 장비와 열쇠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인 사

○ 신규채용

- 2023. 7. 7.

-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김 원 철
- 임 행정사무관
명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김 동 혁
- 임 시설주사보시보
명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 2023. 8. 1.

류 정 현

- 임 헌법연구원
(2023. 8. 1. ~ 2033. 7. 31.)

○ 승진

- 2023. 8. 1.

헌법연구원보 유 맑 음
헌법연구원보 이 윤 정
헌법연구원보 정 지 혜

- 임 헌법연구원
(2023. 8. 1. ~ 2033. 7. 31.)

○ 전보

- 2023. 7. 6.

헌법연구원 배 상 준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교수)

- 2023. 7. 2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 규 환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직무대리

(2023. 7. 24. ~ 별도 발령시까지)

행정관리국 총무과(비상계획)

전문경력관 나군 진 준 욱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 파견

- 2023. 7. 18.

국회사무처

이사관 박 철 호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국회사무처

이사관 곽 현 준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2023. 7. 18. ~ 2024. 7. 17.)

- 2023. 8. 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교수)

헌법연구원 김 규 립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교수)

명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국외장기연수 파견근무
(2023. 8. 3. ~ 2024. 8. 2.)

○ 휴 직

- 2023. 7. 2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 지 영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직무대리 해제

명 육아휴직
(2023. 7. 24. ~ 2024. 2. 29.)

- 2023. 7. 31.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주사 이 경 민

명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주사보 박 신 영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경리) 지원근무 해제

명 육아휴직
(2023. 7. 31. ~ 2024. 7. 30.)

○ 복 직

- 2023. 7. 17.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AACC지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유 정 민

명 육아휴직 복직

- 2023. 7. 25.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전문임기제 다급 박 수 희

명 육아휴직 복직

- 2023. 8. 1.
헌법연구원 양 소 연

명 고용휴직 복직

- 2023. 8. 3.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원사무관 이 상 진

명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

○ 퇴 직

- 2023. 7. 7.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행정사무관 박 문 영

의원면직(지방전출)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23년 7월>

7. 3. 「하계 해외 로스쿨생 교육실무연수」 실시
- 교육기간: 7. 3.(월) ~ 7. 28.(금)

- 교육대상: Nina Puchalski(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Joshua Kim(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 at Manoa)

- 교육내용: 헌법관련 외국 사례 조사 등
지도연구관 부여 연구과제 수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실무연수」 실시

- 교육기간: 7. 3.(월) ~ 7. 31.(금)

- 교육대상: 서형덕(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

- 교육내용: 연구관련 조사업무 등 지도
연구관 부여 과제 수행 등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3, 4기)」 실시

- 교육기간

[3기] 7. 3.(월) ~ 7. 14.(금), 원격교육

[4기] 7. 17.(월) ~ 7. 28.(금), 집합교육

- 교육대상: 총 111명(3기 58명, 4기 53명)

- 교육내용: 헌법재판실무 교육, 청구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연습,
토론 등

7. 13. 변론

- 2023헌라2 국회의원회와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7. 19.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년 제4호(통권 제61호) 발간
 - 발간일자: 7. 19.(수)
 - 수록내용: 독일·오스트리아 등 세계 헌법재판에 대한 최신 판례, 모나코 대법원 소개, 국외통신원 소식 등
- 7. 20. 선고결과: ‘2021헌라2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등 총 39건
 - 인용 4, 합헌 9, 기각 14, 각하 12
- 7. 25. 선고결과: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 기각 1
- 7. 27.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연구관 임용안
- 7. 31.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제3기)』 실시
 - 연수기간: 7. 31.(월) ~ 8. 4.(금)
 - 연수대상: 전국 중등교원 30명
 - 연수내용: 헌법 및 헌법재판 등
- 7. 1. ~ 7. 31.
 -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343,819
(누적통계: 2,452,542건)

○ 심판사건통계표

심판사건총괄표																
2023. 7.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제	
	합 계	전달 (년) 미제	이달 (년) 접수	합 계	결 정											취 하
					계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7 월 계	합 계	1,770	1,557	213	173	170					4	9	15	142 (130)	3	1,597
	위헌법률	55	55													55
	탄핵	1	1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10	8	2	1	1								1		9
	헌법소원 계	1,704	1,493	211	171	168					4	9	14	141 (130)	3	1,533
	\$68①	1,125	977	148	126	124					4		14	106 (98)	2	999
\$68②	579	516	63	45	44						9		35 (32)	1	534	
금 년 누 계	합 계	3,276	1,672	1,604	1,679	1,658 <16>	34 <3>	13 <13>			31	148	159	1,273 (1,223)	21	1,597
	위헌법률	94	76	18	39	36 <10>	25 <1>	7 <9>				3		1	3	55
	탄핵	1		1	1	1							1			
	정당해산															
	권한쟁의	13	7	6	4	4					2			2		9
	헌법소원 계	3,168	1,589	1,579	1,635	1,617 <6>	9 <2>	6 <4>			29	145	158	1,270 (1,223)	18	1,533
	\$68①	2,278	1,020	1,258	1,279	1,267 <2>		4 <2>			29		158	1,076 (1,038)	12	999
\$68②	890	569	321	356	350 <4>	9 <2>	2 <2>				145		194 (185)	6	534	

※ 주

1. 결정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3. 7.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48,875	47,278	46,114 <808>	730 <504>	309 <223>	70 <52>	28 <29>	901	3,230	8,570	32,266 (29,960)	10	1,164	1,597
위헌법률	1,107	1,052	922 <395>	342 <294>	99 <74>	18 <13>	7 <14>		378		78		130	55
탄핵	4	4	4					1		2	1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28	119	100					22		29	49		19	9
헌법소원	계	47,634	46,101 <413>	388 <210>	210 <149>	52 <39>	21 <15>	877	2,852	8,539	32,137 (29,960)	10	1,015	1,533
	§68①	37,855	36,856 <186>	124 <107>	91 <63>	20 <16>		877	5	8,539	26,328 (24,578)	8	864	999
	§68②	9,779	9,245 <227>	264 <103>	119 <86>	32 <23>	21 <15>		2,847		5,809 (5,382)	2	151	534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등록도서 현황

(2023. 7. 31.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2년 말 누계		180,001	83,738	96,263	36,710	59,553
2023년	전월 말 누계	2,882	1,474	1,408	364	1,044
	7월	480	433	47	15	32
	소 계	3,362	1,907	1,455	379	1,076
총 계		183,363	85,645	97,718	37,089	60,629

○ 주요신착도서

- 2023년도 7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한국법령정보원	한국법령정보원	2023
• 독일 민법전 가족법	오 중 근	박 영 사	2023
•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박 영 사	2023

【일 본】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マイノリティ〉の政策實現戰略	横尾俊成	新曜社	2023
• 「もしも夫が亡くなったらどうしよう?」と思ったら読む本	島根猛	クロスメディア・パブリッシング	2023
• 「強み」を活かして顧客をつかむ!あなたにもできる 税理士のためのセルフブランディング実践ブック	内田敦	第一法規株式会社	2023
• 「別表四と五」完全攻略本	高下淳子	中央経済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我々は」から「私は」の時代へ	西尾力	日本評論社	2023
• [全訂版] 労務管理における労働法上のグレーゾーンとその対応	野口大	日本法令	2023
• 18歳からはじめる民法	潮見佳男	法律文化社	2023
• 18歳までに知っておきたい契約のはなし	神坪浩喜	みらいパブリッシング	2023
• 2023~2024年版 どこでもできる通關士選擇式徹底對策	片山立志	日本能率協會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2023
• 2023-2024年版 図解わかる労働基準法	莊司芳樹	新星出版社	2023
• 2023年版 樂學マンション管理士 過去問8年間	住宅新報出版	住宅新報出版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2023年版 出る順社務士 当たる！直前予想模試[模試2回分・2023年4月の法改正に対応]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LEC総合研究所 社会保険労務士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2023年版 出る順行政書士 当たる！直前予想模試 [特典：記述式問題 解説動画]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LEC総合研究所 行政書士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3訂版 不動産売買・賃貸借契約とモデル書式	東京弁護士會 法友全期會	日本法令	2023
• 3訂版 応用自在！内容証明作成のテクニック	みらい総合法律事務所	日本法令	2023
• 60分でわかる！ECビジネスのための法律 超入門	小野 智博	技術評論社	2023
• 6-2訂版 アイキャッチ 図解道路交通法	道路交通法実務研究会	東京法令出版	2023
• C-Book 刑法I〈総論〉改訂新版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LEC総合研究所 司法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C-Book 刑法II〈各論〉改訂新版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LEC総合研究所 司法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GMP変更管理・技術移轉 リスクベース評価と申請 の考え方	古澤 久仁彦	じほうう	2023
• OD>技能実習生と日本語教育	眞 嶋 潤 子	大阪大學出版會	2023
• SDGsの基礎	武蔵野大學教養 教育部會	武蔵野大學出版會	2023
• アウトドア六法 正しく自然を楽しみ・守るための法律	-	山と溪谷社	2023
• アクチュアル行政法 [第3版補訂版]	市橋 克哉	市橋 克哉	2023
• アドバンス債権法	長島・大野・ 常松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23
•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正当化の法理論の 再構築	茂木 洋平	尚學社(文京區)	2023
• アメリカ環境法における救済法理	米谷 壽代	ナカニシヤ出版	2023
• いのちの法と倫理 [新版]	葛生 榮二郎	法律文化社	2023
• ウクライナ戦争をめぐる国際法と国際政治経済	浅田 正彦	東信堂	2023
• おそろおそろ育休	西 靖	ミシマ社	2023
• グローバル課題としての難民再定住	望月 葵	ナカニシヤ出版	2023
• ケーススタディでわかるグループ通算制度の申告 書の作り方	足立 好幸	中央經濟社	2023
• ケース別株式会社・有限会社の役員変更登記の手續	永 潤 圭 一	日本法令	2023
• こんなところではつまづかない！民事訴訟手續21 のメソッド	東京弁護士會 親和全期會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サプライチェーン契約の基本と書式	長谷川 俊明	中央經濟グループパ ブリッシング	2023
• ジェンダー平等社會の實現へ「おかしい」から 「あたりまえ」に	杉井 静子	日本評論社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스타디憲法	曾我部眞裕	法律文化社	2023
•ゼロから信頼を築く弁護士の顧問先獲得術	高橋喜一	學陽書房	2023
• たのしい刑法I 總論	島伸一	弘文堂	2023
• 디지털株主總會の法的論点と實務	太田洋	商事法務	2023
• ドイツ大土地所有史論	加藤房雄	廣島大學出版會	2023
• どうする? 利用者の金銭問題 ケアマネジャーのための債務整理入門	平林剛	第一法規出版	2023
• どこがどうなる!? 令和5年度 税制改正の要点解説	小畑良晴	清文社	2023
• どの段階で何をする? 業務の流れでわかる! 遺言執行業務	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	第一法規出版	2023
• トピックから考える日本國憲法	山元一	北大路書房	2023
• はじめての中國法務Q&A	經營法友會 中國法務研究會	商事法務	2023
• ハラスメント対応の法律相談	中井智子	青林書院	2023
• ビジネス法入門	中村信男	中央經濟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フィリピン家事事件の實務	伊藤弘子	日本加除出版	2023
• プレストップ法學	池田眞朗	弘文堂	2023
• プレップ労働法 第7版 (プレップシリーズ)	森戸英幸	弘文堂	2023
• プロフェッショナル グループ通算制度	足立好幸	清文社	2023
• プロフェッショナル・サービスにおける組織アイデンティフィケーション構造	小谷恵子	千倉書房	2023
• ベーシックスタディ民事訴訟法	越山和廣	法律文化社	2023
• ポイントがよくわかる マンガ不動産境界入門 6訂版 (図解不動産業)	西本孔昭	住宅新報出版	2023
• まずはここから! ベーシックな事例で學ぶ 企業法務の仕事	河村寛治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みんなが欲しかった! 行政書士の最重要論点150 2023年度 [試験によく出る論点を図表で整理!](TAC出版)	TAC行政書士講座	T A C 出版	2023
• よくわかる民事裁判	山本和彦	有斐閣	2023
• よくわかる不動産の相續	ランドマーク 税理士法人	日経BP	2023
• 個人契約型社員制度と就業規則・契約書作成の實務	萩原京二	日本法令	2023
• 改訂 消費税インボイス制度導入の實務 登録手續から税額計算、電子インボイスまで	安部和彦	清文社	2023
• 改訂2版 相續専門の税理士、父の相續を担当する	清田幸弘	あさ出版	2023
• 改訂9版 労災保険 給付基礎日額の手引	労働調査會	株式會社労働調査會	2023
• 経理担当者の視点から! 顧問先の経営課題を引き出すコミュニケーション術 ~withコロナの变化の中で選ばれる税理士となるために~	田村夕美子	第一法規	2023
• 季刊 刑事弁護113号	季刊刑事弁護編集部	現代人文社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季刊 刑事弁護114号	季刊刑事弁護編集部	現代人文社	2023
• 固定資産税土地評価に関する基本的事項と書地認定	山本 一 清	プログレス	2023
• 攻めの法務 成長を叶える リーガル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教科書	渡部 友 一 郎	日本加除出版	2023
• 課税所得計算と企業會計の接点と乖離	小林 裕 明	同文館出版	2023
• 過失相殺率算定の實務	千葉法曹實務研究会	日本加除出版	2023
• 関係者間取引の法務と稅務	タ ッ ク ス	清 文 社	2023
• 關与先から相談を受けても困らない! デジタル財産の稅務 Q&A	河 合 厚	ぎょうせい	2023
• 教えて南部先生! 18歳までに知っておきたい選挙・國民投票Q&A	南 部 義 典	シーアンドアール研究所	2023
• 教えて合田先生! 18歳までに知っておきたいお金の授業	合 田 菜 實 子	シーアンドアール研究所	2023
• 交通事故損害賠償法 第3版	北 河 隆 之	弘 文 堂	2023
• 旧統一協會被害者救済新法を解説する 寄附の不当勧誘防止法 その意味と問題点	櫻 井 罔 郎	櫻 の 花 出 版	2023
• 國稅通則法コンメンタール 稅務調査手續編	日本弁護士連合會 日弁連稅制委員會	日 本 法 令	2023
• 國際法を編む	高 橋 力 也	名古屋大學出版會	2023
• 國際取引法	井 原 宏	東 信 堂	2023
• 基本爭訟法務 自治体行政救済法〈基礎〉編	友 岡 史 仁	信 山 社 出 版	2023
• 基本行政法判例演習 (基本シリーズ) 單行本 (ソフトカバー)	中 原 茂 樹	日 本 評 論 社	2023
• 基本刑法II 各論	大 塚 裕 史	日 本 評 論 社	2023
• 企業法研究の序曲	筑波大學大學院ビジネス科學研究群法學學位プログラム	同 友 館	2023
• 金融商品取引法・金融サービス提供法 (消費者のための金融法講座)	櫻 井 健 夫	民 事 法 研 究 會	2023
• 内部通報制度運用の手引き [第2版] ——改正公益通報者保護法 解説	中 島 茂	商 事 法 務	2023
• 図解 労働時間管理マニュアル	森 紀 男	日 本 法 令	2023
• 図解 稅務調査対応の法的反論マニュアル	吉 田 正 毅	日 本 法 令	2023
• 図解でわかる 土地・建物の税金と評価	富 田 建	日 本 實 業 出 版 社	2023
• 図解ポケット 令和6年義務化に對應! 相續登記手續きがよくわかる本	岡 住 貞 宏	秀 和 シ ス テ ム	2023
• 図解わかる會社法	弁護士法人横浜パートナー法律事務所	新 星 出 版 社	2023
• 図解離婚のための準備と手續き	鈴 木 幸 子	新 星 出 版 社	2023
• 令狀實務詳解 [補訂版]	安 東 章 ほか	立 花 書 房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令和5年度版 税制改正のポイント<速報版>	稅務研究會	稅務研究會出版局	2023
• 令和5年新版 消防基本六法	消防法規研究會	東京法令出版	2023
• 令和5年新版 危險物六法	危險物法令研究會	東京法令出版	2023
• 令和5年版 警察官實務六法	警察政策學會	東京法令出版	2023
• 令和5年版 司法書士 合格ゾーン 当たる! 直前予想 模試[問題・答案用紙取り外し可能]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LEC 総合研究所 司法書士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令和5年版 入門税法	公益社団法人 全國經理教育協會	清文社	2023
• 令和5年版 火災報告取扱要領ハンドブック	防災行政研究會	東京法令出版	2023
• 論点別インデックスで引く 養育費・婚姻費用判断 の考慮要素	森 公 任	新日本法規出版	2023
• 龍谷大學矯正・保護総合センター研究年報第12号	龍谷大學矯正・ 保護総合センター	現代人文社	2023
• 里親になりませんか 子どもを救う制度と周辺知識	吉田 榮穂子	日本法令	2023
• 武力によらない平和を生きる	大脇 雅子	旬報社	2023
• 一帯・中・東南アジアとの取引を中心に理解する	山下 眞弘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民法〔財産法〕講義	長 坂 純	勁草書房	2023
• 民法講義録 第3版	新井 誠	日本評論社	2023
• 民法總則	田山 輝明	成文堂	2023
• 犯罪被害者救済便覽	須藤 純正	商事法務	2023
• 法律事務所「總合力」經營の實務	長井 友之	日本加除出版	2023
• 法實踐の解剖學	樫田 美雄	晃洋書房	2023
• 法學部生のための法解釋學教室	森 光	中央經濟グループパ ブリッシング	2023
• 法學入門	永井 和之	中央經濟社	2023
• 法學入門	田中 成明	有斐閣	2023
• 法解釋の問題	アントニン	勁草書房	2023
• 弁護士が教える自分と家族の 生前整理ノート	根本 達矢	文響社	2023
• 弁護士のための離婚調停&相談の實況中継	高井 重憲	第一法規出版	2023
• 保險關係訴訟	山下 丈	民事法研究會	2023
• 封鎖法の現代的意義	浦口 薫	大阪大學出版會	2023
• 不動産オーナーのための 成功する不動産相續の全 技術	12人の相續對策コン サルタント	合同フォレスト	2023
• 不動産の鑑定評価・相續税の財産評価・固定資産 税の評価における増減価要因	黒 澤 泰	プロGRESS	2023
• 副業・兼業の實務上の問題点と對応	堀田 陽平	商事法務	2023
• 否認事件の弁護	後藤 貞人	現代人文社	2023
• 否認事件の弁護	後藤 貞人	現代人文社	2023
• 非公開會社における少數株主對策の實務	永吉 啓一郎	清文社	2023
• 非行少年の被害に向き合おう!	岡田 行雄	現代人文社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사례で學ぶ會社法實務	東京司法書士協同組合	中央經濟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司法改革の檢証	鈴木秀幸	日本評論社	2023
• 司法書士5ヶ月合格法 第4版	松本雅典	自由國民社	2023
• 司法書士試験 六法 2024[令和6年度司法書士本試験向け]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LEC総合研究所司法書士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司法試験&予備試験 令和4年 論文過去問 再現答案から出題趣旨を讀み解く。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LEC総合研究所司法試験部	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23
• 司法試験・予備試験 出題趣旨・採点實感アナリティクス	石橋侑大	中央經濟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思想の絶對的自由と外部的行爲への制約	宮原均	八千代出版	2023
• 事案から學ぶ 履行困難な遺言執行の實務	遺言・相續實務問題研究会	日本加除出版	2023
• 社會福祉連携推進法人の制度と會計實務	一般社団法人福祉經營管理實踐研究会	第一法規株式会社	2023
• 死後事務委任契約の實務	吉村信一	稅務經理協會	2023
• 商法實用詳解	松波仁一郎	信山社出版	2023
• 商法總則・商行為法	近藤光男	有斐閣	2023
• 商事法講義	松嶋隆弘	中央經濟社	2023
• 商事法講義4 會社法演習	松嶋隆弘	中央經濟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船舶六法 2023年版	-	成山堂書店	2023
• 船舶衝突法	箱井崇史	成文堂	2023
• 船員六法 2023年版	-	成山堂書店	2023
• 稅理士事務所におけるインボイス・電子帳簿の實務對応	永橋利志	稅務研究会出版局	2023
• 稅理士業務に活かす! 通達のチェックポイント	酒井克彦	第一法規	2023
• 少年警察ハンドブック	大塚尙	立花書房	2023
• 所有者不明土地解消・活用のレシピ	中里功・神谷忠勝・倉田和宏・内納隆治	民事法研究会	2023
• 續・民事手續法における適正手續	戸根住夫	信山社出版	2023
• 數學の時間	松井大助	ぺりかん社	2023
• 勝つ! 社勞士受験 予想問題 徹底攻略2023年版 (月刊社勞士受験別冊)	富田朗	株式會社勞働調査會	2023
• 勝つ! 社勞士受験 一般常識 徹底攻略2023年版	北村庄吾・小森靖人	株式會社勞働調査會	2023
• 新・マルシェ債權總論	宮本健藏	嵯峨野書院	2023
• 新裝版 身近な人の葬儀と葬儀後の手續き・届け出すすべて	-	G a k k e n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信託法とその社會的役割	坂 東 洋 行	中央經濟グループパブリッシング	2023
• 十四訂版 凶解 租稅法ノート	八 ッ 尾 順 一	清 文 社	2023
• 英米法と法の近代	ロ ス コ 一	書 肆 心 水	2023
• 王統と國家	藤 川 直 樹	弘 文 堂	2023
• 外國人のヒューマンライツ コリアンワールド創刊23周年記念出版	戸 塚 悦 朗	日 本 評 論 社	2023
• 元國稅 相續専門40年ベテラン稅理士が教える 損しない!まるわかり!相續大全	秋 山 清 成	K A D O K A W A	2023
• 元國稅専門官がこっそり教えるあなたの隣の億万長者	小 林 義 崇	ダイヤモンド社	2023
• 委任の任意解除權	長 谷 川 貞 之	成 文 堂	2023
• 応用刑法	大 塚 裕 史	日 本 評 論 社	2023
• 医薬品の生物學的同等性試験 ガイドライン対応	緒 方 宏 泰	じ ほ う	2023
• 医薬品の適正流通 (GDP) ガイドライン解説	日本製藥団体連合會 品質委員會	じ ほ う	2023
• 人權條約形成の國際政治	大 内 勇 也	ナカニシヤ出版	2023
• 認知症700万人時代の失敗しない「成年後見」の使い方	鈴 木 雅 人	翔 泳 社	2023
• 日本一シンプルな相續対策 - 認知症になる前にやっておくべきカンタン手続き -	牧 口 晴 一	ワニブックス	2023
• 一冊ですべてわかる! 暗号資産の稅務處理と調査対応のポイント	第一法規株式會社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賃金の不利益変更	朴 孝 淑	信 山 社 出 版	2023
• 任意後見と民事信託を中心とした財産管理業務対応の手引き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民事信託等財産管理業務對策部	日 本 加 除 出 版	2023
• 入管解体新書	山 村 淳 平	現 代 人 文 社	2023
• 赤ちゃんの虐待えん罪	秋 田 眞 志	現 代 人 文 社	2023
• 全訂版 ビジネスを促進する 獨禁法の道標	池 田 毅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絶対に損をしない不動産投資の教科書	高 桑 良 充	ば る 出 版	2023
• 第2版 要件事實勞働法(1) 雇用關係法 I	大 江 忠	第 一 法 規	2023
• 第2版 要件事實勞働法(2) 雇用關係法 II・勞使關係法	大 江 忠	第 一 法 規	2023
• 帝都の法社會史 明治日本の執達吏・勸解吏・代官人群像	川 口 由 彦	日 本 評 論 社	2023
• 第十八改正日本藥局方 第一追補	一般財団法人医薬品 医療機器レギュラト リーサイエンス財団	じ ほ う	2023
• 株主提案と委任狀勧誘	太 子 堂 厚 子	商 事 法 務	2023
• 株主總會ハンドブック	中 村 直 人	商 事 法 務	2023
• 中世の裁判を讀み解く	網 野 善 彦	吉 川 弘 文 館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中小企業法務のすべて	日本弁護士連合會 日弁連中小企業 法律支援センター編	商事法務	2023
• 即解! 印紙税 要点ナビ	寺本 吉男	日本法令	2023
• 地域からみる女性のライフ・キャリア	小倉 祥子	ナカニシヤ出版	2023
•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田村 善之	弘文堂	2023
• 職業安定法の實務解説	労働新聞社	労働新聞社	2023
• 懲戒事例が教える弁護士心得帖	飯島 純子	第一法規出版	2023
• 債權法の未來	大阪弁護士會 民法改正問題特別委員會	商事法務	2023
• 債權總論	潮見 佳男	信山社出版	2023
• 債權回收のチェックポイント 第2版 (實務の技法シリーズ 2)	市川 充, 岸本 史子	弘文堂	2023
• 最新重要判例250 [刑法] 第13版	前田 雅英	弘文堂	2023
• 逐條解説 法人稅法第22條の2	泉 絢也	清文社	2023
• 取引法務と會計・稅務の勘所	北村 導人	商事法務	2023
• 親告罪の現代的意義	中根 倫拓	現代人文社	2023
• 土地所有を考える	松尾 弘	日本評論社	2023
• 統治機構と對抗權力	只野 雅人	日本評論社	2023
• 判例 I N D E X 刑事責任能力	第一法規 「判例体系」編集部	第一法規株式會社	2023
• 平等原則解釋論の再構成と展開	高橋 正明	法律文化社	2023
• 平和憲法をつくった男 鈴木義男	仁昌寺 正一	筑摩書房	2023
• 風俗事犯捜査ハンドブック	樋口 正行	立花書房	2023
• 合格水準 教職のための憲法	志田 陽子	法律文化社	2023
• 港湾六法 2023年版	國土交通省港湾局	成山堂書店	2023
• 海技試験六法 2023年版	-	成山堂書店	2023
• 海上保安六法 2023年版	-	成山堂書店	2023
• 海外取引の稅務リスクの見分け方	伴 忠彦	稅務研究會出版局	2023
• 海運六法 2023年版	-	成山堂書店	2023
• 行政法解釋の技法	伊藤 建	弘文堂	2023
• 行政裁量と行政的正義	榎原 秀訓	日本評論社	2023
• 憲法	伊藤 塾	弘文堂	2023
• 憲法	君塚 正臣	成文堂	2023
• 憲法 I 基本權	渡辺 康行	日本評論社	2023
• 現代日本の紛争過程と司法政策	佐藤 岩夫	東京大學出版會	2023
• 刑法各論判例インデックス	井田 良	商事法務	2023
• 刑事司法記録の保存と閲覽	石塚 伸一	日本評論社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刑事責任問題の核心: 意思の自由と脳科學	松村格	八千代出版	2023
• 和英對譯 日本藥局方外生藥規格2022 (付・技術情報)	局外生規2022 出版檢討會	藥事日報社	2023
• 繪で見てわかる人權	岩本一郎	八千代出版	2023
• 會社の税金 元國稅調查官のウラ技	大村大次郎	技術評論社	2023
• 會社の解散・清算の法人稅務	植松香一	大藏財務協會	2023
• 會社法	田中亘	東京大學出版會	2023
• 會社法 實務問答集V	大阪株式懇談會	商事法務	2023
• 會社法實務スケジュール	橋本副孝	新日本法規出版	2023

【영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A Cultural History of Law in the Modern Age	Richard K. Sherwin	Bloomsbury Academic	2023
• A Practical Approach to Road Traffic Law	Susan Cavender	Bloomsbury Professional	2023
• A Research Agenda for Administrative Law	Carol Harlow	Edward Elgar	2023
• A Short & Happy Guide to Judicial Clerkships	Tessa Dysart	West Academic	2023
• Actual Malice	Samantha Barbas	University of California	2023
• After Nuremberg: American Clemency for Nazi War Criminals	Robert Hutchinson	Yale University	2023
• Algorithms and Law	Martin Ebers	Cambridge University	2023
• An Introduction to Tax Law and Policy	Yoseph M. Edrey	West Academic	2023
• Article 8 ECHR,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UK's Supreme Court	Helena Wray	Hart	2023
• Article 9 Plainly Stated	Adrian Cohen	West Academic	2023
• Assessing Hate Crime Laws	Lucille Micheletto	Springer International	2023
• Autonomous Ships and the Law	Henrik Ringbom	Taylor & Francis	2023
• Behind the Bench: The Guide to Judicial Clerkships, 3rd Revised edition	Debra M. Strauss	West Academic	2023
• Christianity and Constitutionalism	Nicholas Aroney	Oxford University	2023
• Climate Migration Governance and the Discourse of Citizenship in India	Ritumbra Manuvie	T.M.C. Asser	2023
• Combining the Legal and the Social in Sociology of Law	Håkan Hydén	Hart	2023
• Comparative Perspectives in Scottish and Norwegian Legal History, Trade and Seafaring, 1200-1800	Andrew R C Simpson	Edinburgh University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Competition Law in South Asia: Policy Diffusion and Transfer	Amber Darr	Cambridge University	2023
• Constituent Power	Lucia Rubinelli	Cambridge University	2023
• Constitutional Democracy in Indonesia	Melissa Crouch	Oxford University	2023
• Constitutions of Value	Isabel Feichtner	Routledge	2023
• Corporate Governance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s	Franklin Ngwu	Taylor & Francis	2023
• Corruption, Protection and Justice in Medieval Europe	Jonathan R. Lyon	Cambridge University	2023
• Cosmopolitan Strangers in Latinx Literature and Culture	Andrea Fernández-García	Routledge	2023
• Criminal Law	Mark Thomas	Hall and Stott	2023
• Cultural Internationalism: The Logic of a New International Governance	Guo Shuyong	Taylor & Francis	2023
• Dangerous Mountain Escape	Jennifer Brown	Love Inspired Mmp 2in1 Mountain	2023
• Data at the Boundaries of European Law	Deirdre Curtin	Oxford University	2023
• Default Nudges: From People's Experiences to Policymaking Implications	Patrik Michaelsen	Springer	2023
• Democracy Under God	Dawood Ahmed	Cambridge University	2023
• Designing Indicators for a Plural Legal World	Siddharth Peter de Souza	Cambridge University	2023
• Diversifying the Courts: Race, Gender, and Judicial Legitimacy	Nancy Scherer	New York University	2023
• Encounters between Foreign Relations Law and International Law	Helmut Philipp Aust	Cambridge University	2023
• Encyclopedia of Gardening	DK	DK	2023
• Equality within Our Lifetimes	Jody Heymann	University of California	2023
• EU and CARICOM: Dilemmas versus Opportunities on Development, Law and Economics	Stephen Hardy	Taylor & Francis	2023
• EU Enforcement Authorities: Punitive Law Enforcement in a Composite Legal Order	Michiel Luchtman	Bloomsbury	2023
• European Constitutional Imaginaries	Jan Komarek	Oxford University	2023
• Exonerating the Distinguished Jurists	Abdul-Hakim al-Matroudi	Equinox	2023
• Experiences of Criminal Justice: Perspectives From Wales on a System in Crisis	Daniel Newman	Bristol University	2023
• Exploring the Province of Legislation	Francesco Ferraro	Springer	2023
• Fairness in Criminal Appeal	Helena Morão	Springer International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Federal Rules of Evidence 2022-23 Statutory and Case Supplement to Fisher's Evidence, 4th Revised edition	George Fisher	West Academic	2023
• Feminist Frontiers in Climate Justice: Gender Equality, Climate Change and Rights	Cathi Albertyn	Edward Elgar	2023
• Free Movement of Persons in the Nordic States	Katarina Hyltén-Cavallius	Hart Publishing	2023
• Freedom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ean Whittaker	Intersentia	2023
• Freedom, Only Freedom: The Prison Writings of Behrouz Boochani	Behrouz Boochani	Bloomsbury	2023
• Gender, Property and Politics in the Pacific: Who Speaks for Land?	Rebecca Monson	Cambridge University	2023
• Gender, Violenc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Colonial Pacific: 1880-1920	Kate Stevens	Bloomsbury	2023
• Gender-Competent Legal Education	Dragica Vujadinovic	Springer	2023
• General Average and Risk Management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Maritime Business	Maria Fusaro	Springer	2023
• Global Sustainable Cities: City Governments and Our Environmental Future	Danielle Spiegel-Feld	New York University	2023
• Great Debates in Land Law	David Cowan	Hart	2023
• Habermas, Foucault and the Political-Legal Discussions in China	Fan Yang	Springer	2023
• Hart, Fuller, and Everything After	Allan C Hutchinson	Hart	2023
• House Rules: Changing Families, Evolving Norms, and the Role of the Law	Erez Aloni	British Columbia University	2023
• Human Rights in Islamic Societies: Muslims and the Western Conception of Rights	Ahmed E. Souaiaia	Taylor & Francis	2023
• Immigration and Crime	Charis E. Kubrin	Springer International	2023
• Imperfect Victims: Criminalized Survivors and the Promise of Abolition Feminism	Leigh Goodmark	California University	2023
• Implement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Dimensions of Compliance	Evan Hamman	Edward Elgar	2023
• Integration Requirements for Immigrants in Europe	Tamar de Waal	Hart	2023
• Investment Management,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and Challenges in Law and Regulation	Professor Iris H-Y Chiu	Bloomsbury	2023
• Judicial Responsibility and Coups d'Etat	Kriangsak Kittichaisaree	Routledge	2023
• Justice is Served	Leslie Karst	She Writes	2023
• Juvenile Justice Administration	Peter C. Kratcoski	Springer International	2023
• Knowing What the Law Is	Alexander Somek	Hart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Landmark Cases in Privacy Law	Paul Wragg	Hart	2023
• Law and Chance	Emanuele Severino	Bloomsbury Academic	2023
• Law and Healing: A History of a Stormy Marriage	Margaret Brazier	Manchester University	2023
• Law, Humanities and the COVID Crisis	Carl F. Stychin	University of London	2023
• Law, Localism and the Constitution	John Stanton	Routledge	2023
• Lawfare	Raul Zaffaroni	Brill Academic	2023
• Lawyers, Networks and Progressive Social Change: Lawyers Changing Lives	Dr Jacqueline Kinghan	Bloomsbury	2023
•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2nd Revised edition	Susan J. Marsnik	West Academic	2023
• Legal Tech and the Future of Civil Justice	David Freeman Engstrom	Cambridge University	2023
• Louisiana Civil Code with Official Legislative Commentary: 2023 Student Edition	Melissa T. Lonegrass	West Academic	2023
• Make It Count	Benjamin Ferencz	Little, Brown Book Group	2023
• Managing and Developing Your Career as an In-house Lawyer	Ian White	Globe Law And Business	2023
• Maritime Salvage Oper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urand Cupido	Taylor & Francis	2023
• Marketing Global Justice	Christine Schwöbel-Patel	Cambridge University	2023
• Mass Graves, Truth and Justic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Investigation of Mass Graves	Ellie Smith	Edward Elgar	2023
• Mastering the Law School Exam	Suzanne Darrow-Kleinhaus	West Academic	2023
• Mediation and Commercial Contract Law: Toward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Maryam Salehijam	Taylor & Francis	2023
• MINDING THE LAW	Michael Scott	Marble Hill	2023
•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Other Selected Standards	Thomas D. Morgan	West Academic	2023
• Moderniz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ertrand Ramcharan	T.M.C. Asser	2023
•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986-2020	Ellen G. Cohn	Springer International	2023
• Non-State Ru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Contracts, Legal Authority and Application	Johanna Hoekstra	Taylor & Francis	2023
• Organized Crime in the 21st Century	Hans Nelen	Springer International	2023
• Pandemic Police Power, Public Health and the Abolition Question	Tryon P. Woods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Placing the Frontier in British North-East India	Dr Reeju Ray	Oxford University	2023
• Police Governance in England and Wales	Arthur Brown	Routledge	2023
• Practical English Language Skills for Lawyers: Improving Your Legal English	Natasha Costello	Taylor & Francis	2023
• Precarious Protections	Chiara Galli	University of California	2023
• Preclassical Conflict of Laws	Nikitas E. Hatzimihail	Cambridge University	2023
• Principl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4th Revised edition	Stephen J. Ware	West Academic	2023
• Principles of Contract Law, 5th Revised edition	Robert A. Hillman	West Academic	2023
• Private Law in Context: Enriching Legal Doctrine	Marc Loth	Edward Elgar	2023
• Properties of Law	Kaarlo Tuori	Cambridge University	2023
• Property Rights and Social Justice: Progressive Property in Action	Rachael Walsh	Cambridge University	2023
• Property Rights in Wartime	Daniela Luigia Caglioti	Routledge	2023
• 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at Risk	Alice M. Nah	Taylor & Francis	2023
•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Emerging Economies	Augustine Edobor Arimoro	Taylor & Francis	2023
• Puerto Rico's Constitutional Paradox	Jorge M Farinacci-Fernós	Hart	2023
• Quick Guide Crypto Assets	Hannah Appel	Springer Gabler	2023
• Rainmakers: Born or Bred	Patricia K. Gillette	Globe Law And Business	2023
• Reasons and Context in Comparative Law	Sophie Turenne	Cambridge University	2023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 Concise Guide to the New York Convention's Uniform Regime	Franco Ferrari	Edward Elgar	2023
• Regulation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act, Regulatory Responses, and Beyond	Daniel Cash	Taylor & Francis	2023
• Reinsurance and the Law of Aggregation: Event, Occurrence, Cause	Oliver D. William	Taylor & Francis	2023
• Relevance of Duties in the Contemporary World: With Special Emphasis on Gandhian Thought	Raman Mittal	Springer	2023
• Religious Accommodation and its Limits	Farrah Raza	Hart	2023
• Remedies Cases and Materials in Australian Private Law	Katy Barnett	Cambridge University	2023
•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Poverty	Martha F. Davis	Edward Elgar	2023
• Responsibility on Trial: Liability Standard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Liana Georgieva Minkova	Cambridge University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Rhetoric of InSecurity: The Language of Danger, Fear and Safety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Victoria Baines	Taylor & Francis	2023
• Rule-Formulation and Binding Precedent in the Madhhab-Law Tradition	Talal Al-Azem	Brill	2023
• Sceptical Perspectives on the Changing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	Richard Johnson	Hart	2023
• Selected Statutes on Trusts and Estates, 2023	Mark L. Ascher	West Academic	2023
• Sentencing the Self-Convicted: The Ethics of Pleading Guilty	Julian V Roberts	Bloomsbury	2023
• Sexual Violence on Trial: Lo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Rachel Killean	Taylor & Francis	2023
• Shaped by the Nuanced Constitution	Christina Lienen	Hart	2023
• Shi'ite Legal Theory	Kumail Rajani	Edinburgh University	2023
• Social Justice and the World of Work: Possible Global Futures	Brian Langille	Bloomsbury	2023
• Social Media, Freedom of Speech, and the Future of our Democracy	Lee C. Bollinger	Oxford University	2023
• Sociology of Law	Qiliang Wang	Springer	2023
• Sovereignty Across Generations: Constituent Power and Political Liberalism	Alessandro Ferrara	Oxford University	2023
• Spaces of Law and Custom	Edoardo Frezet	Routledge	2023
• Tax Crimes and Enforcement in the European Union: Solutions for law, policy and practice	Umut Turksen	Oxford University	2023
• Teaching and Learning in Environmental Law: Pedagogy, Methodology and Best Practice	Amanda Kennedy	Edward Elgar	2023
• Territorial Disputes and State Sovereignty: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Jorge E. Nunez	Taylor & Francis	2023
• The Architecture of Law	Brian M. McCall	University of Notre Dame	2023
• The Asian Law and Society Reader	Lynette J. Chua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ambridge Companion to Gender and the Law	Stéphanie Hennette Vauchez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ambridge Handbook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Shyamkrishna Balganes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ambri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Trademark Law	Irene Calboli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ambridge Handbook of Judicial Control of Arbitral Awards	Larry A. DiMatteo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ambridge Handbook of Smart Contracts, Blockchain Technology and Digital Platforms	Larry A. DiMatteo	Cambridge University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aw of Algorithms	Woodrow Barfield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hanging Role of Property Law: Rights, Values and Concepts	Ernst Nordtveit	Edward Elgar	2023
• The Confederate Jurist	William C. Gilmore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Culpable Corporate Mind	Elise Bant	Hart	2023
• The Digital Rights Delusion	Andrea Monti	Routledge India	2023
• The Documentary History of the Ra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Volume 38	John P. Kaminski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2023
• The Environmental Rule of Law for Oceans	Froukje Maria Platjouw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European Un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tug Gnar	Emerald	2023
• The Framework of Criminal Justice	Michael King	Routledge	2023
• The Freest Market in the World: The Constitutional Logic of Economic Liberty in China's Hong Kong	Gonzalo Villalta Puig	Taylor & Francis	2023
• The Future of EU Constitutionalism	Matej Avbelj	Bloomsbury	2023
• The Good Chinese Lawyer: A Student Guide to Law and Ethics	Adrian Evans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Humanitarian Fix: Navigating Civilian Protection in Contemporary Wars	Joe Cropp	Taylor & Francis	2023
• The Ir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ume 14, 2019	Fiona de Londras	Bloomsbury	2023
• The Judge, the Judiciary and the Court: Individual, Collegial and Institutional Judicial Dynamics in Australia	Gabrielle Appleby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Language of Law and Food	Salvatore Mancuso	Routledge	2023
• The Law Multiple	Irene van Oorschot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Law of Securitisations	Pierre de Gioia Carabellese	Routledge	2023
• The Laws of Restitution	Prof Robert Stevens	Oxford University	2023
• The Long Arc of Legality	David Dyzenhaus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Making Sense of Politics, Media, and Law	Gary Watt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Morality of Defensive Force	Jonathan Quong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 The Necessity of Nature: God, Science and Money in 17th Century English Law of Nature	Monica Garcia-Salmones Rovira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Ohio State Constitution, 2nd Revised edition	Steven H. Steinglass	Oxford University	2023
• The Practical Guide to Public Inquiries	Isabelle Mitchell	Bloomsbury	2023
• The Puerto Rico Constitution	Rafael Cox Alomar	Oxford University	2023
• The Routledge Handbook of Law and Society	Mariana Valverde	Routledge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The Spectrum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on Global Governance	Kenneth W Abbott	Taylor & Francis	2023
• The Timing of Guilty Pleas: Lesson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Kevin Cheng	Cambridge University	2023
• The Transitional Justice Citizen	Briony Jones	EdwardElgar	2023
• The Transnationalization of Anti-Corruption Law	Philip M. Nichols	Taylor & Francis	2023
• The Vigilant Citizen: Everyday Policing and Insecurity in Miami	Thijs Jeurssen	New York University	2023
• Theories of Legal Relations	Emmanuel Jeuland	Edward Elgar Publishing	2023
• Trade and Commerce: Canada's Economic Constitution	Malcolm Lavoie	McGill-Queen's University	2023
• Transitional Justice in Aparadigmatic Contexts	Tine Destrooper	Routledge	2023
• Uniform Commercial Code, 7th Revised edition	James J. White	West Academic	2023
• Unlocking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5th edition	Mark Ryan	Taylor & Francis	2023
• Vulnerable Consumers and the Law: Consumer Protection and Access to Justice	Christine Riefa	Taylor & Francis	2023
• Wade & Forsyth's Administrative Law	William Wade	Oxford University	2023
• We the Mediated People	Joshua Braver	Oxford University	2023

【독일】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Post)Koloniale Rechtswissenschaft	Mohr	Mohr	2023
• Aktivierung risikorelevanten Institutswissens durch Strafrecht	Michael Huff	nomos	2023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ür Verbraucherstreitigkeiten	Kardos Gordon	Mohr	2023
• Angriffe auf Rettungskräfte	Johannes Reuschen	nomos	2023
• Anordnungen im Bauvertrag	Sebastian Tenberge	nomos	2023
• Anwachsungsprinzip 2.0	Pechtl Maximilian	Mohr	2023
• Arbeitszeitrechtliche Vorgaben und Vereinbarungen für Lizenzfußballer	Jan Wilhelm	nomos	2023
• Armut und Vertrag	Kraft, Julia	Mohr	2023
• Ärztliche Schweigepflicht im Strafverfahren	Vahlenkamp, Annika Kristin	Mohr	2023
• Atypischer Einzelfall und allgemeines Gesetz	Weber Max	Mohr	2023
• Barrierefreiheit im ÖPNV	Matthias Knauff	nomos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Binnenmarktrecht als Mehrebenensystem	Stefan J. Geibel	nomos	2023
• Das Bußgeldverfahren im Datenschutzrecht	Arne Brest	nomos	2023
• Das gesamte Behinderten- und Rehabilitationsrecht	walhalla	walhalla	2023
• Das gesamte Betreuungsrecht	walhalla	walhalla	2023
• Das gesamte Insolvenzrecht	walhalla	walhalla	2023
• Das gesamte Kinder- und Jugendrecht	walhalla	walhalla	2023
• Das Merkmal der Nutzung von Insiderinformationen	Greta Sonnenschein	nomos	2023
• Das Phänomen „Digitaler Hass“	Elisa Hoven	nomos	2023
• Das Übereinkommen zur Beendigung bilateraler Investitionsschutzverträge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Laura Böse	nomos	2023
• Delokalisierte Erfindungen	Gabriel Prado Ojea	nomos	2023
• Der EU Data Act und der Zugang zu Sekundärmärkten am Beispiel des Handwerks	Rupprecht Podszun	nomos	2023
• Der Geheimhaltungskonflikt im Verwaltungsprozess	Mariamo Katharina	Mohr	2023
• Der Polygraf als Entlastungsbeweis	Makepeace, Johannes	Mohr	2023
• Der Rücktritt des Reisenden vom Pauschalreisevertrag	Sebastian Löw	nomos	2023
• Der Schutz des Vertragspartners bei Fehlvorstellungen über die Rechtsform aufgrund falscher Firmierung	Torsten Fitzke	nomos	2023
• Die Abwicklung von Banken nach Art. 18 SRM-VO	Lukas Zöllner	nomos	2023
• Die allgemeine Informationspflicht des reformierten Code civil	Simone I. J. Ernst	nomos	2023
• Die demokratische Bedeutung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Marie Diekmann	velbrueck	2023
• Die Entwicklung der romanistischen Methode bei Fritz Schulz	Rohdenburg Philipp	Mohr	2023
• Die Handelsregistersperre nach Art. 261 ff. ZPO	Nick Mezger	Dike	2023
• Die kollektive Wahrnehmung von Musikrechten	Struve-Urbanczyk Alice	Mohr	2023
• Die Mehrheit von Testamentsvollstreckern nach § 2224 BGB	Nicolas Kretschmann	nomos	2023
• Die Rechte der Gemeinden beim Ausbau des Übertragungsnetzes	Decher Johanna	Mohr	2023
• Die Rechtswirklichkeit der datenschutzrechtlichen Einwilligung	Rothmann Robert	Mohr	2023
• Die Verteilung von Verlusten aus der Offenmarktpolitik des Eurosystems	Mayer Matthias	Mohr	2023
• Die vertragliche Pauschalierung von Kartellschäden	Kramer, Jörn Christian	Mohr	2023
• Einheitlicher Rechtsschutz Europäischer Patente	Carl Jacob	Mohr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EuGH und Religionsfreiheit	Schmeller Tilman	Mohr	2023
• EUROPE'S CALL TO ARMS	Ciro Sbailò	nomos	2023
• Flexibilitätspotentiale auf Verteilernetzebene	Nora Christina	Mohr	2023
• Foreign Terrorist Fighters: Phenomenon and Legal Countermeasures	Luyuan Bai	nomos	2023
• FRAU.MACHT.RECHT	Elisabeth Dux	nomos	2023
• Gesamt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rechtliche Positionen bei Unternehmensübertragungen	Christian Bochmann, Christoph Kumpan, Anne Röthel, Karsten Schmidt	nomos	2023
• Gleichh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Gesine Voesch	nomos	2023
• Grundlagen – SGB II: Bürgergeld,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Thomas Knoche	walhalla	2023
• Herrschaft als Auftrag	Straßburger, Benjamin	Mohr	2023
• Ihr Recht auf Kur und Reha	Ralf Hauner	walhalla	2023
• Impfpflichten	Nettesheim Martin	Mohr	2023
• Informationelle Menschenrechte und digitale Gesellschaft	Mohr	Mohr	2023
• Inhalt und Grenzen des Erfüllungsanspruchs	Lobach, Quincy C	Mohr	2023
• Journalistischer Quellenschutz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und Globalisierung	Gerhardinger, Lukas	Mohr	2023
• Kartellrecht in der Zeitenwende	Alexander Kirk	nomos	2023
• Klima, Landschaft, Eingriffe und Bauleitplanung	Stephan Mitschang	nomos	2023
•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Michael Nietsch	nomos	2023
• Namens- und Kennzeichenschutz für Immobilien	Johannes Bernhardt	nomos	2023
• Neue Herausforderungen im Verwaltungs- und öffentlichen Sicherheitsmanagement	Jürgen Stember	nomos	2023
• Normentheorie im digitalen Zeitalter	Milan Kuhli	nomos	2023
• Oberfinanzpräsident Rolf Grabower	Arndt Pauline	Mohr	2023
• Planerische Neuausrichtung der urbanen Mobilität	Fimpel Stefan	Mohr	2023
• Rechtsdiskurs, Rechtsprinzipien, Rechtsbegriff	Mohr	Mohr	2023
• Rechtsmethodik in China	Oei Patrick	Mohr	2023
• Rekonstruktion des Verbotsirrtums: Die einheitliche Irrtumslehre	He Liu	nomos	2023
• Schwärme im Recht	Mohr	Mohr	2023
• Selbstregulierung und Soft Law im japanischen Gesellschaftsrecht	Pfeifer Michael	Mohr	2023
• Spätverfolgung von NS-Unrecht	Moritz Vormbaum	Springer Berlin	2023
• Umgekehrter Vollzug im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Pascher Tobias	Mohr	202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Unionsbürgerschaft als Kompetenzproblem	Luber Mirjam	Mohr	2023
• Unterschiede im (arbeits)rechtlichen Schutz von Erwerbstätigen	Philipp Melle	nomos	2023
• Verhaltensökonomisch informierte Steuerungsinstrumente	Gebhardi Bruno	Mohr	2023
• Vis attractiva contractus: Ausstrahlungswirkung von Verträgen im Internationalen Privat- und Zivilverfahrensrecht	Horn Simon	Mohr	2023
• Vorstandshaftung bei Innovationsentscheidungen	Ann Margret Herzhoff	nomos	2023
• Wettbewerbsbeschränkendes Arbeitgeberverhalten	Friedrich Preetz	nomos	2023

- 2023년도 7월 교환도서

- 교환처: 미국 미시건대학교
- 교환일자: 2023. 7. 7.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Michigan Law Review vol.121 no.6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3

- 교환처: 일본 변호사연합회
- 교환일자: 2023. 7. 13.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NIBEN Frontier vol. 224	第二東京弁護士會	第二東京弁護士會	2023

- 교환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 교환일자: 2023. 7. 18.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Wisconsin law review vol.2023 no.3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2023

- 교환처: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교
- 교환일자: 2023. 7. 18.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早稻田法學 vol.98 no.2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3

- 교환처: 중국정법대학
- 교환일자: 2023. 7. 18.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The journal of human rights v.21 no.2-6	中國政法大學	中國政法大學	2023
• 政法論壇 v.228	中國政法大學	中國政法大學	2023



○ 헌법재판소장 동정

연 월 일	내 용
2023. 7. 17.(월)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국회의사당 중앙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2023. 7. 17.)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